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 4-3

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지원 대상

구매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sup>13)</sup>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구매대금 지급

판매기업

중소기업

-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sup>14)</sup>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금액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전년대비 약속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sup>15)</sup>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13)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14)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정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5)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

###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는 금액

- 지급(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신용카드업자)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loan)제도” 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작성일 이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 행사하고 이후에는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 제도” 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지원 내용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2%의 세액공제

- 16~60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1%의 세액공제

- 한도 : 법인세(소득세)의 10%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시행령 제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시행령 제6조의2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 지원 대상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가장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할 것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3년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 성실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sup>16)</sup>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이상을 사용

-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sup>17)</sup>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당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sup>18)</sup>

업 종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현금영수증의무발생업종	5억원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환경복원업, 건설업(일부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농업·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과 그 외의 사업	20억원

16)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8

17)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 월세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sup>19)</sup>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교육비 공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시행령 제117조의3, 시행규칙 제52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3,9항,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용어 해설

-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

18)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19)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4-5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sup>20)</sup>

### 지원 내용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100만원 한도)<sup>21)</sup>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

### 유의사항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
-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제 배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시행령 제121조의6
- 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20) “4-4 성실사업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참조

21)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포함)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접대비의 손금산입

중소기업

4-6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지원 내용

- 2018년 12월 31일까지 접대비 한도를 우대(1,800만원 ⇒ 2,400만원)하여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접대비 한도 (①+②)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①	2,400만원	1,200만원
②	수입금액	적 용 료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0.03%

### 문화접대비 한도

-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 접대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그 매출처·매입처·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향응·위안·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 문화접대비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절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해 해당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

4-7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 지원 대상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sup>22)</sup>

### 지원 내용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부분만 환급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149조의2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용어 해설

- 결손금 :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적용사례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09.1.1
  - ② 2017년(제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손금) : △50,000,000
  - ③ 2016년(제8기) 법인세 신고내용
    - Ⓐ 과세표준 : 120,000,000
    - Ⓑ 산출세액 : 12,000,000
    -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8,000,000
- A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16년 산출세액의 감소액
$$\begin{aligned} & 2016년\ 산출세액 - (2016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times 2016년\ 법인세율 \\ & = 12,000,000 - (120,000,000 - 50,000,000) \times 10\% \\ & = 5,000,000 \end{aligned}$$
  - ② 2017년 환급한도액 :  $12,000,000 - 8,000,000 = 4,000,000$
  - ③ 2017년 환급신청액 :  $\text{Min}[\text{①}, \text{②}] = 4,000,000$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

4-8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감면 배제 사유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 사회적기업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지원⇒금융및세제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의 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sup>23)</sup>

- (요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구 분	내 용		
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고용비율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다음의 기준 이상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5%+20명		
시 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임 금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지원 내용

-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2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 감면 배제 사유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시행령 제79조의7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  
(사업주지원⇒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 1588-1519



2017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www.smba.go.kr](http://www.smb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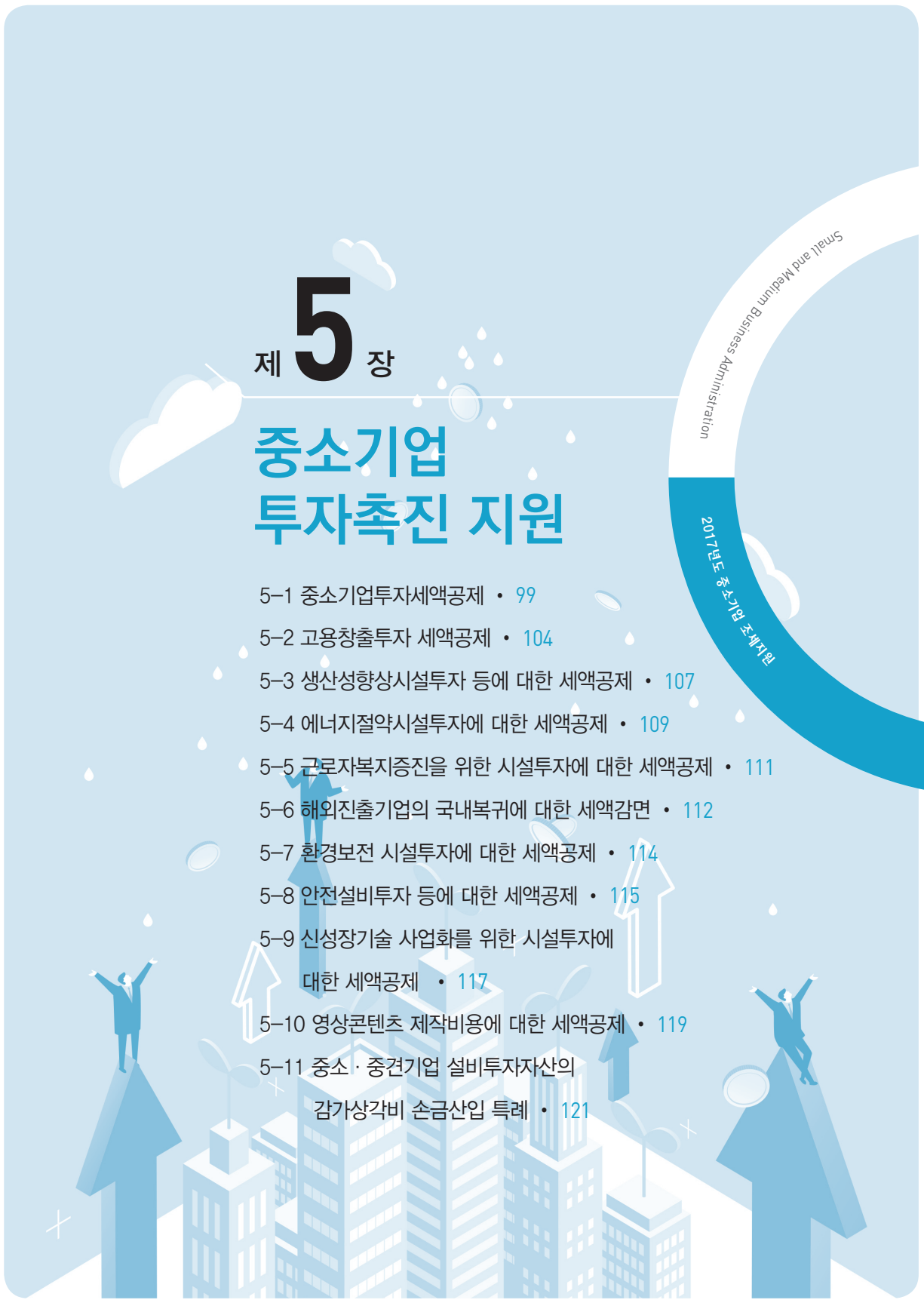
# 제 5 장

##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 5-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99
- 5-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104
- 5-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07
- 5-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9
- 5-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11
- 5-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112
- 5-7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14
- 5-8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15
- 5-9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17
- 5-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19
- 5-11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121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5-1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신규상장 증권 기업<sup>1)</sup>을 경영하는 내국인
  -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 중인 것 제외)
  -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sup>2)</sup>
  - ③ 정보시스템<sup>3)</sup>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산 제외)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회계등의 지원 소프트웨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기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
- 위 사업용 자산에 해당 하더라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

### 해당 업종<sup>4)</sup>

업 종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①작물재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②축산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③어업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④광업		광업	B	1,000억원 이하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증권기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⑤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억원 이하	
		가족·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식료품 제조업	C10		1,0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코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⑥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800억원 이하	
⑦건설업		건설업	F	1,000억원 이하	
⑧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G	1,000억원 이하	
⑨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⑩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⑪출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⑫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⑬방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⑭전기통신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⑮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⑯정보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⑰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⑱광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⑲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㉑포장 및 충전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㉒전문디자인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㉓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㉔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㉕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㉖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㉗직업기술학원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㉘엔지니어링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㉙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하역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억원 이하
㉚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0억원 이하
㉛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㉜선박관리업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㉝의료기관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㉞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여행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관광공연장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관광극장유희업, 관광시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궤도업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관광사진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㉟노인복지시설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㊱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㊲전시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㊳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㉞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유역사업, ㉟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㊲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㊴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㊵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㊶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㊷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㊸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㊹일반도시가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1000억원 이하
㊺무형재산권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억원 이하
㊻연구개발지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㊼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㉔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㉕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㉖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억원 이하
㉗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1000억원 이하
㉘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3%(신규상장중소·중견기업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나대표 사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 당시 구입했던 인쇄기가 고장이 잦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늘어나는 디지털 출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식 기계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던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 기계구입 시 절세방안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 세무사 답변

출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사업용 인쇄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시며, 아래와 같은 기계장치 투자를 하는 경우 240만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기계장치 투자액(사업용 자산 해당) : 100,000,000원
  - 디지털 신기계 구입비 : 80,000,000원
  - 중고 인쇄기계 구입비 : 20,000,000원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액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중고자산 투자 제외) 투자액의 3%
 
$$80,000,000원 \times 3\% = 2,4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15.03.13 개정)

##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① 신청인	③ 대표자 성명 나 대 표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 ***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2017 년 01월 01일부터 2017 년 12월 31일까지	
③ 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5항	131
			⑨ 공제율 3%
			⑩ 대상세액 2,400,000
			⑪ 공제세액 2,400,000
⑬ 세액공제 합계		1A3	
			2,400,000
			2,400,000

### 질문과 답변

**질문** > 재무기능만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올해 초 인사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물류/인테리어/개발/가맹과 같은 영업업무를 포함하는 ERP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sup>5)</sup>

**세무사 답변** >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ERP시스템 구축비용을 인사, 재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물류, 인테리어 등 영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입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5) 서면법령해석법인2014-21121(2015.04.22)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5-2

상시근로자를 유지하는 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중고품, 리스에 의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 제외)를 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단,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되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고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하여 적용)

###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비
-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통 산업합리화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무선설비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 제외)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대상사업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 과학관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 지원 내용

-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①+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3%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

② 추가공제금액 :

구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일반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	투자금액의 4%	투자금액의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투자금액의 5%	투자금액의 4%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종기·수도사업, 건설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제외),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만 해당),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한 대상사업 : 투자 금액의 추가 1% 가산

- 추가공제금액 한도 : (① + ② + ③) - ④

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sup>6)</sup>의 졸업생 수×2,000만원(중소기업 2,500만원)

② 청년근로자등의 수<sup>7)</sup>×1,500만원(중소기업 2,000만원)

③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①의 졸업생 수 - ②의 청년근로자등의 수)×1,000만원(중소기업 1,500만원)

④ 해당 과세연도에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5년 이내의 금액으로서 이월공제 받은 금액

## 유의 사항

- 세액공제 후 2년간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1)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일정한 학교
- 2)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연령에서 차감-6년한도),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간예납세액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 질문과 답변

**질문 1)** 개인사업자인 나사장은 해당 사업을 2017.7.1. 주식회사 절세로 법인전환하였는데,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2016.1.1.~12.31.)의 상시근로자수는 36.75명이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전환일전일까지(2017.1.1.~2017.6.30.)의 상시근로자수는 43.5명이며, 법인전환일(2017.7.1.)의 상시근로자수는 46명이었습니다. 2017년 법인전환과 함께 큰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였는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sup>8)</sup>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2)**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인테리어시설 및 진열대, 가구등 제반 설비를 새로 취득하여 리뉴얼하였는바 이와 같은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sup>9)</sup>

**세무사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절세와 같이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쟁점시설 중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등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외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항상 요건 검토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8) 서면법규-599 (2014.06.17)

9) 조심2015서671 (2015.06.23)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 5-3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①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 ②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 ③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④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⑤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⑥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 타인이 보유한 위 ③, ④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이용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 질문과 답변

**질문 1)**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올해 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인 설비장치 2건을 신품 8천만원, 중고품 1천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는데 감면 받을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떻게 있을까요? 2017년 예상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성향상 설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예상 과세표준 : 500,000,000

2017년 예상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300,000,000 \times 20\% = 80,000,000$

2017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80,000,000 \times 7\% = 5,600,000$

2017년 납부할 세액 :  $80,000,000 - 5,600,000 = 74,400,000$ 으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56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5-4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등
  -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과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1%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제외)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 질문과 답변

**질문 1)** 주식회사 절세는 경북 안동시 소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축열식 히트펌프<sup>10)</sup>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요?<sup>11)</sup>

**세무사 답변)**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 투자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2)**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 생산을 위해 대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한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sup>12)</sup>

**세무사 답변)**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심야에 냉온수를 축열조에 생산·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냉난방하는 전기절감 냉난방시스템

11) 서면법령해석법인2015-1109 (2015.12.14)

12) 서면법인2015-153(2015.05.29)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5-5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하는 내국인
  - ①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②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제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직업생활 편의시설
  - 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⑥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 지원 내용

- 취득금액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③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감면 세액 추정

-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여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43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5-6

-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중소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경우 관세 감면

### 지원 대상

-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sup>13)</sup>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 ③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sup>14)</sup>

### 지원 내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 및 ③에 해당)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기준을 따름

● 관세의 감면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한도4억), 지원대상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50%(2억원 한도) 감면



**감면 세액 추징**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추징
- 감면받은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 사업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관세 추징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기타 관세청장 고시 서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15조의2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5-7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 ③ 온실가스감축시설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시행령 제22조의3, 시행규칙 제13조의3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내국인

5-8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의 시설에 투자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① 제조업, 물류산업, 우수체인사업자,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통합리화시설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④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⑥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
  - ⑦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 ⑧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
  - 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 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⑪ 내진보강 설비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7%(기술유출방지시설비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5-9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설)

###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자율주행차등 미래형자동차와 인공지능등 지능정보시설, 기반소프트웨어등 차세대 SW시설, 실감형콘텐츠등 콘텐츠시설, 지능형반도체센서등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시설, 5G이동통신등 차세대방송통신시설, 바이오화합물등 바이오헬스시설, 신재생에너지등 에너지 신산업환경시설, 고기능섬유등 융복합소재시설,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등 로봇, 무인이동체등 항공우주시설<sup>15)</sup>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 ② 투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이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단, 중소기업은 예외)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5 별표7(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



### 감면 세액 추정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내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시행령 제22조의 5, 시행규칙 제13조의 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5-10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 지원 대상

-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건<sup>16)</sup>을 갖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상제작자가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또는 민속문화재)]등을 소재로 제작한 것 또는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 1일)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sup>17)</sup>으로 정해진 비용
- ②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송프로그램등

1. 광고물 또는 그 밖의 판촉물
2. 보도, 시사 프로그램 또는 토론 프로그램
3. 퀴즈 쇼, 게임 쇼, 패널 쇼, 버라이어티 쇼 또는 토크 쇼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4. 경쟁이나 대회를 포함하거나 경쟁이나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
5. 연극 또는 예술 공연을 생방송이나 녹화로 방송하는 프로그램
6. 훈련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7. 운동경기 또는 각종 시상식 등을 중계하는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의 경우 7% 세액공제

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 6의 요건을 갖춘 자

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8의 9(영상콘텐츠제작비용)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시행령 제22조의 6, 시행규칙 제13조의 6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5-1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신설)

### 지원 대상

-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sup>18)</sup>

#### ①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공구, 기구 및 비품
- 기계 및 장치

#### ②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적용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각방법의 적용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준용

### 지원 내용

- 아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서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서를 제출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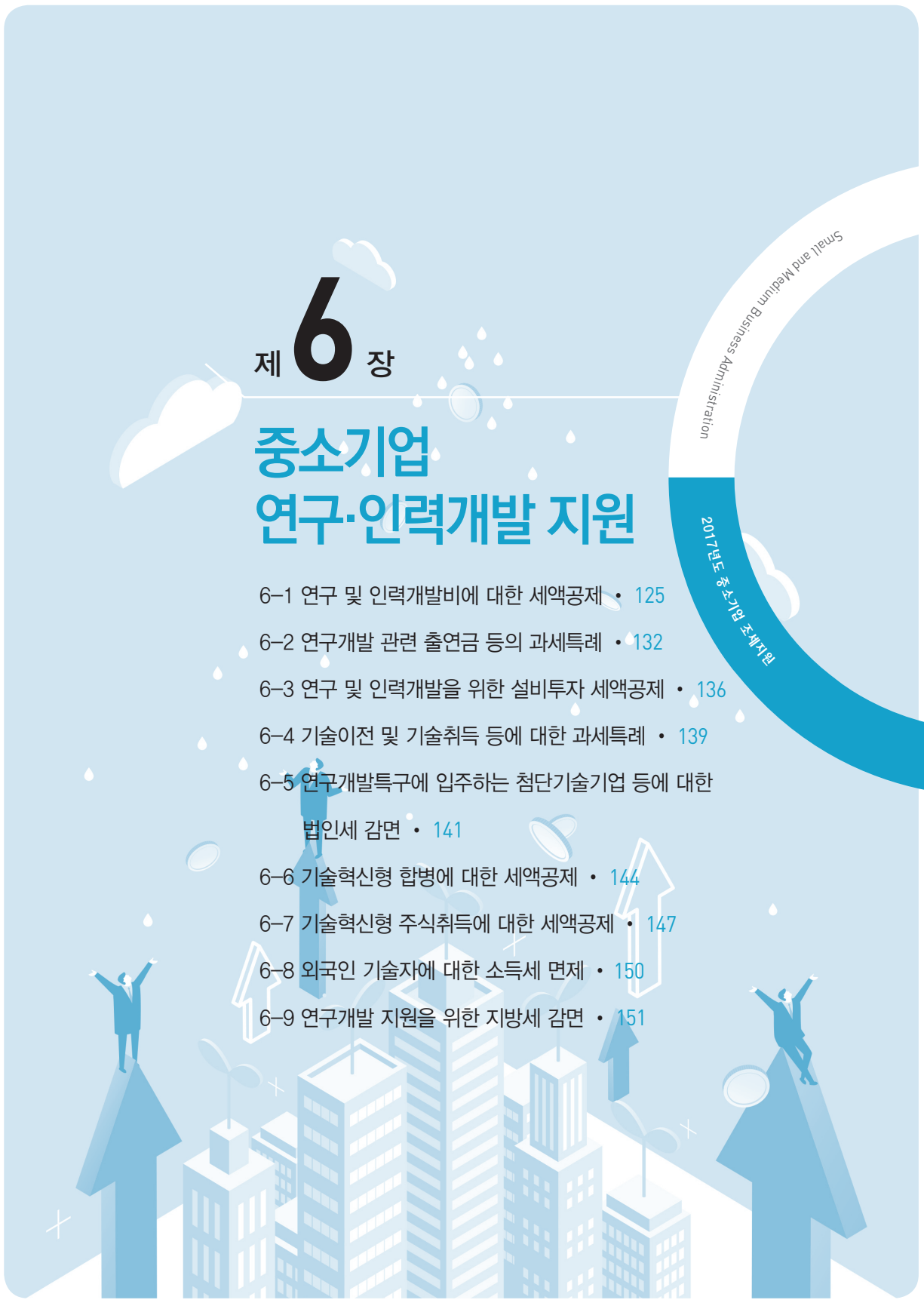
# 제 6 장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25
-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132
- 6-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136
- 6-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39
- 6-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141
- 6-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144
- 6-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47
- 6-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150
- 6-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151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정책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 6-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란?

-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7, 별표8에 나열된 비용
-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

㉠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공제율

㉡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공제율

단,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공제율

### 공제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제외된 후 1~3년	제외된 후 4~5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용	당해연도 투자금액	25%	15%	10%	8%	3%를 한도로 함**
	초과금액	50%	40%	40%	40%	3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30%	20%+(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 한도 : 30%			

\*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

\*\* 1%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 용어해설

-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함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회사 절세의 대표이사 나사장은 자동차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10년째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사장은 경쟁사의 제품 기술 향상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성장세가 둔화되고, 예전같이 마진을 못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지금의 가격경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연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신제품 개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연구부서에서 신제품 개발 성공으로 급격한 수입금액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된 연구부서의 인건비 등의 추가 지출로 회사 자금 상황에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6,000,000원 (2014년)17,000,000원 (2015년)25,000,000원 (2016년)30,000,000원
- (2017년)40,000,000원

이때 나사장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문제로 절세 방안이 없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연구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근거

2017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  $\text{Max}[\text{㉠}, \text{㉡}] = 10,000,000\text{원}$

㉠ 총액발생기준 :  $40,000,000 \times 25\% = 10,000,000\text{원}$

㉡ 증가액발생기준 :  $(40,000,000\text{원} - 30,000,000\text{원}) \times 50\% = 6,250,000\text{원}$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의 상무이사인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및 경쟁회사의 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습니다.

나상무는 세액공제를 부인당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 세무사 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세액을 공제받는 규정이지만, 상무이사 등이 접대업무를 겸하는 경우나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세액 불공제되는 사유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상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타업무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인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 전담부서의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sup>1)</sup>
- ☞ 연구개발부서의 상무이사가 법인카드로 거래처에 접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에 다수의 거래처에 접대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sup>2)</sup>
- ☞ 연구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sup>3)</sup>

1) 조심 2012서523, 2012.8.6., 대법원 2011.6.24. 선고2011두6844 판결

2) 조심2014중3244 (2014.08.11.)

3) 서면2팀-2279, 2006.11.09.

##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li> </ul> <p>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p> <p>㉠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p> <p>㉡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50%</p> <p>단,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p> <p>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li> </ul> <p>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p> <p>㉠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8%, 중소기업제외 1~3년 15%, 4~5년 10%</p> <p>㉡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40%</p> <p>단,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p> <p>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30% 한도)</p>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3.14>

###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000-0000 )					
2 과세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 신청내용	⑥ 구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회계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9항	166	25%	10,000,000	10,000,000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15.3.13>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2쪽 중 제1쪽)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000-0000 )						
2 과세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정 과목	구 분	자재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발비		2	30,000,000	12	10,000,000		
합 계		2	⑥ 30,000,000	12	⑦ 10,000,000		⑧
		:					총 계
							40,000,000
합 계			⑨	⑩	⑪	⑫	⑬ 40,000,000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14 해당과세연도 발생액	15 직전년발생액 (16+17+18+19)	'16.01.01~'16.12.31 16(직전 1년)	'15.01.01~'15.12.31 17(직전 2년)	'14.01.01~'14.12.31 18(직전 3년)	'13.01.01~'13.12.31 19(직전 4년)
40,000,000	78,000,000	30,000,000	25,000,000	17,000,000	6,000,000
20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15/4)	19,500,000	21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16+17+18)/3	24,000,000	22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16+17)/2	27,500,000
23 증가발생액 (2015년14-21, 2016년14-22, 2017년 이후 14-16)					12,500,000

4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㉔ 대상금액(=㉓)	㉕ 공 제 율	㉖ 공제세액
		40,000,000	25 %	10,000,00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㉖<㉔경우 공제 제외)	㉔ 대상금액	㉑ 공제율	㉒ 공제세액	* 공제율 - 중소기업 : 50% - 중견기업 : 40% - 그 외의 기업 : 30%
	12,500,000	50 %	6,250,000	

㉓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㉖과 ㉒ 중 선택)	10,0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㉑과 ㉒ 중 선택)	
	중견기업 (㉑와 ㉒ 중 선택)	
	일반기업 (㉑와 ㉒ 중 선택)	

(2쪽 중 제2쪽)

5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6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한 내국인

6-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연구개발출연금 등



기업  
(구분경리)

연구개발출연금 등 손금산입

### 지원 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일정한 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